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703
----------	-----

제출년월일 : 2001. 11. 18.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1)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3)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4)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기반구축

□ 주요골자

- (1)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 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에 의함(안 제3조).
- (2)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안 제4조).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6조).
- (4)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안 제8조).
- (5)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면 융자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융자추천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 지급(안 제10조).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7.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4.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제7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계획) 시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융자신청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 부터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기금의 용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사회복지과 (940-4432)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이 평 자
	위 생 담 당	박 찬 규
	담 당 자	정 영 숙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시행에 따른 근거 마련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기반구축

□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에 의함.
(안 제3조)
- 나.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사용. (안 제4조)
- 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6조)
- 라.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
(안 제8조)

마.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시장에게 신청하면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후 융자업무취급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융자추천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貸下)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지급. (안 제10조)

□ 검토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 동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동 계획을 타 기금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하는 조항의 문안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식 품 위 생 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